

「임실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나.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기소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수사중일 때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금지규정 명문화(안 제2조)
- 다. 의원면직 처리시 비위사실여부 확인 의무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자 문책규정 마련(안 제3조 ~ 제4조)
- 라.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위임규정(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심사예고 : 5일
- 라.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임실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주소: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이도리), 우편번호: 55927, 전화: 063)640-2883, FAX: 063)640-2169, E-mail: jh03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임실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

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신대용의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